

제 588 호
1977.2.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윤
편집 : 문화공보관 조 용 하
• 전화 75 - 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 - 6444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139 호 서울특별시립가족시장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3
◎ 규 칙	
제 1669 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규칙...	3
제 1670 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중 개정규칙.....	5
제 1671 호 서울특별시종합선계선 운영규칙중개정규칙.....	8
◎ 훈 령	
제 465 호 서울특별시경찰서 특수지역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8
◎ 고 시	
제 14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적승인.....	13
제 15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13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6 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지적승인	14
제 17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척사) 결정및지적승인	15
제 1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15
제 19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공람고시	17
제 20 호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17
제 2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일부변경승인	18
제 22 호	연탄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19
제 2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9
◎ 공 고		
제 20 호	불량공산품판매, 진열금지 및 수거	20
제 21 호	불량공산품판매, 진열금지 및 수거	21
제 22 호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완료공고	22
제 23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완료공고	22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완료공고	23
제 7 호 (중구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2 동 공인 개각공고	25
제 1 호 (녹지사업소공고)	공인개각공고	25
제 1 호 (계량검정사업소공고)	공인개각공고	28
◎ 사 령		29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가축시장사용료 징수조례폐지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7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1139 호

서울특별시립가축시장사용료
징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립 가축시장 사용료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7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669 호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②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 6 조 (소송위임료등) ①법률 고문
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위임
료는 별표 소송위임료 지급 기준
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주임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월 각 4만원이내의 고문
료를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7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시행당시 위촉
된 법률고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소 송 위 임 로 지 급 기 준				
구 소 분 별	지 급 기 준 내 용 (소 송 물 가 액)	기 준 액		비 고
		착 수 금	사 배 금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20,000원	1) 전부 승소의 경	
	2. 경이또는 동일선 사건	30,000원	우는 착수금의 150%	
	3. 전항이외의 본안 사건	원		
	1) 50만원 미만	30,000원	2) 60%이상 승소의	
	2) 50만원 이상	50,000원	경우는 착수금과	
	3) 100만원 이상	70,000원	동액	
	4) 300만원 이상	90,000원	3) 소취하(쌍불취하	
	5) 500만원 이상	120,000원	포함)외 경우는	
	6) 800만원 이상	150,000원	착수금의 반액	
	7) 1,000만원 이상	180,000원	(단 조건후 취하는	
	8) 1,500만원 이상	200,000원	제외)	
9) 2,000만원 이상	300,000원			
10) 3,000만원 이상	500,000원			
11) 중요사건 (소가에 관계 없이 당시의 행, 재정상 에 증대한영향을 받을 사건	300,000원 ~500,000원			

구 소 분 별	지 급 기 준			비 고
	비용 (소송 물가액)	기 준 액		
		확 수 금	사 려 금	
행 정 소 송	1. 신청사건 2. 각심본안사건 3. 중요사건 (승패에 따라 당시의형, 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사건)	20,000 원 80,000 원 300,000 원 ~500,000 원	민사소송과 동	
공 통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출장 및 여비 6. 기타 실비	실액 실액 실액 (단현강검증의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20,000 원을 별도지급) 실액 국내여비규정 (제1호 해당) 실액		
<p>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7일</p> <p>◎ 서울특별시규칙 제 1670 호</p> <p>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 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p> <p>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기관칭호 는 다음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3. 과 : 시의과와 담당권을 말한다.</p> <p>4. 과장 : 시의과장과 담당권을 말한다.</p>		

6. 청소 : 본청이외의 구, 출장소, 등, 공무원교육원, 산업대학, 남서울종합운동장 건설본부, 주택건설사업소, 병원, 보건연구소, 지하철본부, 소방본부, 시민회관, 농촌지도소, 경찰서, 소방서 기타시의 사업소를 말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 청

일반회계수입금 출납원 세정과 과장 1 계장
전도자금 출납원 작과 주무계장

2. 청 소

가. 구, 출장소 등

징수관 청 소의장
(단 시세는 구청장, 출장소장에 한함)

일반회계수입금 출납원 세무제 1, 2 과장
출장소는 세무과장

각 특별회계수입금 출납원 각 특별회계 주관과장
분입지출원 재무 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일반회계분입수입금 출납원 세무제 1 과 세무제 1 계장
세무제 2 과 정리계장
출장소 세무과 수납계장과 정리계장
등 사무장

각 특별회계 분입수입금 출납원 각특별회계 세입사무담당계장
전도자금 출납원 등 사무장

새입세출의 현금출납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물품 출납원	재무과장
	출장소는 총무과장
분입물품출납원	각과, 실의 장
나. 기타사업소	
징수관	청.소의 장
분입경리관	청.소의 장
물품관리관	청.소의 장
수입금출납원	수납담당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납담당 계장 이하 본호와 같다)
분입저출원	경리담당과장
새입세출의 현금출납원	경리담당과장
물품 출납원	경리과장 또는 주무과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경리계장 또는 주무계장)
분입물품출납원	각과 장
	(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병원에 있어서는 약품에 한하여 약계과장
입시건도자금출납원	청.소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규칙시행전에 행정기구(대통령령제 8328:76.12.30)의 개편에 따라 변경된기관징호 및 지정된 관직은 이 규칙에 의해 변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합설계실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7년 2월 7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671 호

서울특별시종합설계실운영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종합설계실 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중 "건설행정과장" 을 "도로
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서 특수지역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7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 서울특별시훈령제 465 호

서울특별시경찰서특수지역등의
관할구역에관한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경찰서
관할구역중 도로, 교량, 하천, 터널
및 기타 특수지역에 대한 관할
한계를 확정하여 관할구역 분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처리의
일원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
한 경찰서 특수 지역등의 관할구
역(도로, 교량, 하천, 터널 및 기
타 특수지역)은 법령에 따로 정
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
한다.

<p>제 3 조 (관할구역의 지정) 제 2 조에 규정한 도로, 교량, 하천, 터널, 철도 기타 특수지역의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6) 와 같이 지정한다.</p> <p>제 4 조 (업무처리책임) ① 특수지역등의 관할구역 본계선상에서 발생하는 각 종사고 (교통사고, 번사사고, 익사 및 각종 범죄신고) 에 대하여는 먼저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일 차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며 동시에</p>	<p>관할 경찰서에 동보 인계하여야한다.</p> <p>② 동보를 받은 경찰서는 간부책임 인솔하에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 여 사건을 인수하고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p> <p>③ 경찰관은 관할구역이 아님을 이 유로 전기각항에 규정한 조치를 때만 또는 지연할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별표 > 도로상의 관할한계

순위	구	관	관 할 서	비	고
1	청계천차도 및 고가도로 (중부소방서 어구에서 성동교까지)		청계천북쪽 관할경찰서	단	차도 삼각하 수도까지 관할
2	남대문로 (조흥은행본점앞 횡단보도에서 신세계 백화점 경유 대연자정문앞)		남대문경찰서	.	
3	아현로타리 (고가도로포함) 에서 삼거리 차도	연남동	마포경찰서	.	
4	갈월동 쌍굴다리 도로		용산경찰서	.	
5	대방로타리에서 중암동삼거리 차도		성북경찰서	.	

순위	구	간	관할서	비고
6	남대문에서	염천교 로타리 동측 횡단 보도 및 동로타리 남측횡단보도 이남 의 차도	남대문경찰서	단 차도 삼각 하수도까지 관할
7	대신파출소	앞에서 대림주유소앞까지의 차도	남부 경찰서	"
8	신길동	오비맥주 앞에서 대림파출소 앞의 차도	노량진경찰서	"
9	용담동어구 (시의버스 터미널) 로타리 에서	군자교 동단의 차도	청량리경찰서	"
10	미아삼거리 북측	횡단보도에서 수유리 방면 차도	북부 경찰서	"
11	미아삼거리에서	장위동방면 차도	성북경찰서	"
12	상월곡동에서	석관동의 차도 (석곡교 남측)	청량리경찰서	"
13	계관삼거리에서	대신파출소앞까지의 북개도로	남부 경찰서	"
14	계관삼거리에서	신림삼거리까지의 차도	관악 경찰서	"
15	구로 1 동	409-415까지의 도로	남부 경찰서	"
16	만리동에서	아현동까지의 차도	서대문경찰서	"

〈별표 2〉 교 량 의 관 할 한 계			
순 위	구 간	관 할 서	비 고
1	한강에 설치된 교량	한수이북지역 관할경찰서	
2	성 동 교	성동 경찰서	
3	봉 의 우 교	중부 경찰서	
4	월 능 교	태능 경찰서	
5	석 부 교	북부 경찰서	
6	청 량 교	태능 경찰서	
7	양 화 교	강서 경찰서	
8	교외교 및 안양천에 가설된 교량전부	영등포경찰서	
〈별표 3〉 하 천 의 관 할 한 계			
순 위	구 간	관 할 서	비 고
1	한 강 수 면	한수이북지역 관할경찰서	
2	여의도 셋강	영등포경찰서	
3	홍 계 천	서부 경찰서	
4	정농천 (동대문서와 청량리서 경계의 하천)	동대문경찰서	
5	중량천 (태능서관할경계지역까지) (이하 지역)	태능 경찰서 동부 경찰서	
6	도림천 (도림천교 및 신도림동 460- 구로 1 동 73 번지간의 하천)	남부 경찰서	
7	도림천 천교 신도림동 460-707 번지 간 하천	영등포경찰서	
8	안 양 천	영등포경찰서	강서경찰서와 경계하는 안양천

〈별표 4〉 터널의 관할한계			
순위	구	관할서	비고
1	사직터널	종로경찰서	
2	남산 제1호 터널	중부경찰서	
3	남산 제2호 터널	"	
4	삼천터널	종로경찰서	
5	북악터널	성북경찰서	
6	남산 제3호 터널	남대문경찰서	
〈별표 5〉 철도의 관할한계			
순위	구	관할서	비고
1	가라면 사천교-수색 및 구내 경기도 도계에 이르는 철도및 정거장	서부경찰서	
2	구로동 385의 65-115호간의 철도	영등포경찰서	
3	도림철교	"	
〈별표 6〉 기타 특수지역의 관할한계			
순위	구	관할서	비고
1	타워호텔	중부경찰서	
2	동구로국민학교	남부경찰서	
3	경찰서와 경찰서 경계 6m이하의 소로	북측 또는 동측을 관할하는 경찰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4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197 호 (76.12.9) 로 신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적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1.28

서울특별시

가. 공원신설결정 지적승인 조서

공원종류	공 원 명	위	치	면적(㎡)	비고
근린공원	반 화 공 원	영등포구	반화동 169 일대	73,000	
아동공원	반화계 1 아동	"	" 184-11 일대	6,600	
"	반화계 2 아동	"	" 302-2 "	3,200	
"	반화계 3 아동	"	" 266 "	3,920	
"	반화계 4 아동	"	" 581-11 "	4,200	

◎ 서울특별시고시제 15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303 호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된 종로구 삼청동 제 1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서고시 제 355 호 (76.12.30) 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도시계획결정 고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함

2. 부고시 구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도시계획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시기 바람.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니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장유하고 의견 제출인에 대한 별도

통지로 이 고시로 갈음한다.

1977.1.28.

서울특별시장

인 가 고 시 내 용

가.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칭	위 치	면 적
삼청계1구역 재개발사업	종로, 삼청동 산 2 일대	(2,243명) 7,401㎡

나. 시행자 성명, 주소 : 서울특별시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개년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건물의 지목등 명세별첨(생략)

마.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6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1.28

서울특별시장

가. 시장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소매시장	강남구 풍납동 178-1	3,374명	계획선저축 127명 제외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7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 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외청사)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및지적승인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와 행정권한 위임가. 시설 (공용외 청사) 조사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2.1
서울특별시강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공용외 청사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신설동 97-35 외 7 필지	1,015.2평	시유지 635.4
			국유지 4.7
			사유지 375.1
			계 1,015.2

※ 별첨도면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1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65 호 (76.7.15)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및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계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2.3
서울특별시강

1. 사업시행지 : 성동구 화양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118 구획외 3 필지

2. 사업의 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 성동중학교 이전 건립

<p>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4,527 평</p> <p>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p> <p>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사업실시 계획인가즉시 나. 준공예정일 : 78.7.31</p>	<p>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p>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성동구 화양추가지구	118 구획 1 의 53 (나')	학교용지	1,838.2평	원풍산업 주식회사	
	119 구획 1 의 53 (가')	"	1,735.7평	"	
	111 구획 1 의 53 (차)	"	531.3평	"	
	도 로		421.8평		
	계		4,527 평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소·성명	관 계 인 주소·성명
성동구 화양추가지구	118 구획 1 의 53 (나')	학교용지	1,838.2평	중구 소공동 112-5 원풍산업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근 저당권및지상권설 정)
	119 구획 1 의 53 (가')	"	1,735.7평	"	"
	111 구획 1 의 53 (차)	"	531.3평	"	"
	도 로		421.8평		
	계		4,527 평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 호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공람고시

1. 서울시고시 제 212 호 (76.9.4) 및 서울시고시 제 15 호 (77.1.28) 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인가된 답십리 1, 전농 2, 계기 1, 흥은 6, 삼청 1구역과 건설부고시 제 136 호 (75.8.25) 토 인가된 옥수 3구역중 현지개량 지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 42 조와 동법제 36 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3. 서울시 고시 제 269 호 (76.10.21) 로 관리처분계획 지정 고시된 옥수 3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따른 권적변경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 86 조에 의거 변경하고
4. 도시계획법 제 41 조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14 일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고시에 대한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1977 . 2

서울특별시 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 호

일단의 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나 마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p>◎ 서울특별시고시제 22 호</p> <p>연탄에 대한 최고가격지정</p> <p>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에 따른 상공부 고시 제 77-6 호에 의거</p>	<p>서울특별시 지역 연탄 (2 호탄) 의 판매소도와 가정도의 최고가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p> <p>1977.2.4</p> <p>서울특별시장</p>																							
<p>다 음</p> <p>가. 연탄의 최고가격</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탄 종류</th> <th colspan="2">최 고 가 격</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판 매 소 도</th> <th>가 정 도</th> </tr> <tr> <td>2 호탄 (3.6 kg)</td> <td>41.00 원</td> <td>45.00 원</td> <td></td> </tr> </table>	탄 종류	최 고 가 격		비 고	판 매 소 도	가 정 도	2 호탄 (3.6 kg)	41.00 원	45.00 원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최 고 가 격</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판 매 소 도</th> <th>가 정 도</th> </tr> <tr> <td>41.00 원</td> <td>45.00 원</td> <td></td> </tr> </table>	최 고 가 격		비 고	판 매 소 도	가 정 도	41.00 원	45.00 원		<table border="1"> <tr> <th colspan="2">비 고</th> </tr> <tr> <td></td> <td></td> </tr> </table>	비 고			
탄 종류		최 고 가 격			비 고																			
	판 매 소 도	가 정 도																						
2 호탄 (3.6 kg)	41.00 원	45.00 원																						
최 고 가 격		비 고																						
판 매 소 도	가 정 도																							
41.00 원	45.00 원																							
비 고																								
<p>나. 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해제시 까지</p> <p>부 칙</p> <p>1. 이 고시는 1977.2.4 부터 시행한다.</p> <p>2.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0 호는 이를 폐지한다.</p> <p>◎ 서울특별시고시제 24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식승인</p> <p>1. 건설부 고시 제 2493 호 (66.6.21) 및 건설부 고시 109 호 (76.7.19) 로 결정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p>																								

<p>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와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p> <p>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p>	<p>와 귀합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7.2.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 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	----	----	----	---	---	---	---	---	---	---	---

신설	대로	3	34	25 m	1,100m	홍은동	379-4	응암동	326-11		
----	----	---	----	------	--------	-----	-------	-----	--------	--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20 호

불량공산품판매, 진열금지및수거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2 항 및 3 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량공산품에 대하여 판매, 진열금지 및

수거명령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5 조 2 항에 의거 이를 공고함.

1977.1.29

서울특별시장

1. 해당업체별 품질검사 기준미달 내용					
업체명	제품명	형식	소재지	불합격 검사 항목	
박진전사	진전지	6DM	종로 예치동 157	외형의 치수, 개로단지전압 지속시간미달.	
		4DM		외형의 치수, 저속시간미달.	
		4PM		지속시간미달.	
동양사	진전지	6DM	종로 예치동 157	지속시간미달.	
		4PM		외형의 치수, 저속시간미달.	
2. 수거기간 : 77.3.1일까지 3. 판매, 진열금지 및 수거명령일 : 77.1.29 4. 처분사유 : 공산물 품질검사기준 미달.			및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량 공산품에 대하여 판매진열금지 및 수거명령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5조 2항에 의거 이를 공고함.		
◎ 서울특별시공고제 21 호 불량공산물판매, 진열금지 및 수거 공산물 품질관리법 제 6 조 제 2 항			1977.1.28 서울특별시 상		
1. 해당업체 및 기준미달내용					
업체명	제품명	소재지	표시사항	검사 성적	위반사항
(주)장미목수화강지공업사	화장지	동대문구 신설동 149	치수 : 194±3mm 길이 : 30mm 갈색 1점	104.2±mm 26.9mm 흡수도 17mm 평량 31g/㎡	3.1 부족

- 2. 수거기간 : 77.3.1 까지
- 3. 판매진열금지 및 수거명령일 :
1977.1.28
- 4. 처분사유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 호

도시계획사업(운동장) 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0 호 (76.12.16) 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운동장)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동법 제 46 조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 및 종로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2.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1외 3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운동장)

- 3. 사업시행면적 : 2,370.9평 (7,837.7㎡)
- 4. 사업시행자 : 흥구 충무로 4가 125-1 주식회사 대농, 대표이사 박용학
- 5. 사업기간 : '76.7.6-'76.12.31
- 6. 준공도면 : 준공도면생략
- 7. 검사년월일 : 77.1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2 호 (75.8.14) 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사업(학교)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동법제 46 조 규정과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7.2.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동 589의 2부근
- 2. 사업명 : 도시계획사업 (학교)
낙골국민학교
- 3. 사업시행면적 : 9,629㎡ (2.91정)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5. 사업기간 : 75.8.14-76.11.12
- 6. 준공도면 : 생략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 (한국은행) 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하수시설과 및 용산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아 래

◎서울특별시공고제 24 호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제 29 호 (76.2.10) 로 시행허가한바 있는 도시계획사업 (하수도) 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 85 조제 1 항 및 동법제 46 조제 3 항의 규정과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2. 도시계획법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본사업을 시행하여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본 사

가. 사업의 종류, 경칭 및 시행일시

- (1) 후암동 247-50 알하수도
이설공사 (76.3.10-8.26)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247-56

다. 사업의 규모

- (i) 암거 (1.5m x 1.2 m)
연장 58 m

- (2) 하수도부지 면적 61.5평

라. 준공도면 (생략)

마. 귀속재산 및 양도재산조서

(1) 서울시에 귀속재산				
가. 토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용산구후암동 247-56	구 거	61.5평	한국은행 소유	
나. 시 설 물				
종 류	규 격	연 장	비 고	
암 거 부 대 시 설	1.5 m × 1.2 m	58 m 1 식		
(2) 시행자(한국은행)에 양도 재산				
가. 토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용산구후암동 244-19	대	26.50평	합 계 55.9평	국 유
247-58	"	10.60평		시 유
247-59	"	11.10평		"
249-42	"	7.70평		국 유
1977.2.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7 호

서울특별시 중구신당
2 동 공인 개 각 공 고

신당 2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이
마멸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신당 2 동의 공인이 개 각 하였기

2. 개 각 의 원 형

신
당
2
동
관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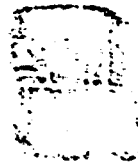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인규정에 의거 공고
한다.

1977년 1월 27일
중 구 청 장

. 개 각 공인 사용일시 :

1977년 1월 일 시

(구)



(신)



◎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공고

제 1 호

공 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기구개편
으로 인하여 직인 제인 및
회계관계 공인을 개 각 사용코저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9조에 의

거 공고함.

1977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녹 지 사 업 소 장

1. 개 각 사용개시일 :

1977년 1월 31일

09:30 시

공 인 개 각 모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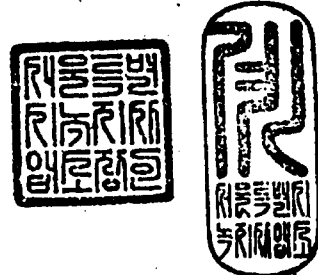
구

신

북부 녹지 사업소
소 장 제 인

남부 녹지 사업소
소 장 제 인

서울특별시 녹지 사업소
소 장 제 인



분임경리 관인

분임경리 관인

분임경리 관인



분임지출원인

분임지출원인

분임지출원인



구

신

북부 녹지 사업소
분임 물품 관리관인

남부 녹지 사업소
분임 물품 관리관인

서울특별시 녹지 사업소
분임 물품 관리관인



분임 물품 출납원인

분임 물품 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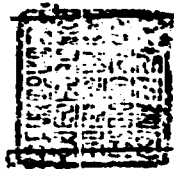
분임 물품 출납원인



세입세출의원금출납원인

세입세출의원금출납원인

세입세출의원금출납원인



구

신

북부 녹지 사업소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남부 녹지 사업소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서울특별시 녹지 사업소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 서울특별시 계량검정
사업소 공고제 1 호

인조제 제 9 조에 의거 공고함.

1977년 1월 21일

공 인 개 각 공 고

서울특별시

계량검정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계량검정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직인, 계인 및 회계관계

1. 개각사용일처 : 1977.1.4

공인을 개각 사용코저 서울시 공

09:30

공 인 조 각 모 형
(신 구 등 록)

소 장 직 인 및 계 인

본 임 경 리 관

본 임 지 출 원



사 령

추연강

◎ 1977.1.27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권경근

지방행정주사시보에 임함.
4호봉을 균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도 봉 구
지방서기관

이창희

전종서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1,2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강성근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행정사무관

이강훈

김병준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복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1,2,3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월에 처함.

김수환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 1977.1.31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

배복용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 1977.2.2

성명	소속	발령사항		비고
백운학	행정과	1호	지방행정주사보시보	신규
모주탁	새마을지도과	"	"	"
김평모	공업과	"	"	"
김태석	연료과	"	"	"
조동권	운영과	"	"	"
박현수	주택행정과	9호	"	"
곽상욱	도시행정과	5호	지방행정주사보	"
이원우	건축지도과	1호	지방행정주사보시보	"
정호섭	세무조사과	"	"	"
오광철	도시가스사업소	8호	지방행정주사보	"
이동국	운수3과	1호	지방행정주사보시보	"
김태진	세정과	"	"	"
박영길	법무담당관	"	"	"
백무경	하수행정과	3호	"	"
김양기	공원과	1호	"	"

◎ 1977.2.2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주사보에 추서함.

김인관

행정주사에 임함.

종로구 근무불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

임창석

서울특별시